

제 11 장 통신

제 11.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된다.
 - 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 나.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 다.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그 밖의 조치, 그리고
 - 라. 부가 서비스의 공급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2. 이 장은 공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 또는 케이블 배급을 포함한 모든 수단에 의한 통신의 전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은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이 협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구축·취득·임대·운영 또는 공급하도록 승인할 것을 한쪽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또는
 - 나.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구축·취득·임대·운영 또는 공급하는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그 관할권 하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제 11.2 조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1. 부속서 I 또는 II 상의 당사국의 유보목록에 따라 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는 당사국의 권리를 조건으로, 한쪽 당사국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바를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부여받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사설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국경 내에서 또는 그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하며, 이를 위하여 제5항 및 제6항을 조건으로, 그러한 기업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 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 또는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 나. 사설 전용 또는 소유 회선을 그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와 상호접속하거나, 또 다른 기업의 전용 또는 소유 회선과 상호접속하는 것
- 다.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선택한 운용규약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 라. 교환, 신호 및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그러한 기업의 사내통신을 위한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국경을 넘어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되거나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달리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제22.1조(일반적 예외)에 더하여, 그리고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메시지의 보안 및 기밀성 보장을 위하여, 또는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조건이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자신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 나.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또는
-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부속서 I 또는 II 에 따라 당사국의 유보에 의하여 제한되는 서비스를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것

6. 제5항의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그러한 서비스의 재판매 또는 공동이용에 대한 제한

- 나. 인터페이스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하여 특정의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 다. 필요한 경우, 그러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 라. 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
- 마. 사설전용 또는 소유 회선을 그러한 망이나 서비스, 또는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전용 또는 소유 회선과 상호접속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그리고
- 바. 통보, 등록 및 면허

제 11.3 조 허가 절차

1.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 가. 모든 허가 기준과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그리고
- 나. 개별 허가를 위한 조건

2.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며, 허가 거부인 경우 요청에 따라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알릴 것이다.

제 11.4 조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

경쟁보장장치

1. 각 당사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2. 위의 제 1 항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 다. 다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러한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필수 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 및 상업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상호접속

- 3.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가. 망 내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 나. 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하는 비차별적인 조건 및 요율에 따라
 - 다.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 또는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 또는 자신의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의 동종 서비스에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 라.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공급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그리고
 - 마.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 4.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적용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
- 5.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상호접속제안을 공개하도록 보장한다.

제 11.5 조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고자 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의무는 그 자체로 반경쟁적인 것이 아니다. 다만, 그러한 의무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그 당사국에 의하여 정의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다.

제 11.6 조 희소 자원의 분배 및 이용

- 1. 각 당사국은 주파수·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자국의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2. 각 당사국은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공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3. 제 9.4 조(시장접근)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공급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자국의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현재 및 미래의 수요에 기초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 11.7 조 규제기관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규제기관이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그리고 부가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규제기관의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도록 보장한다.

제 11.8 조 집행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의무와 관련된 국내 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와 권한을 유지한다. 그러한 절차와 권한은 금전적 벌칙, 시정 명령이나 허가의 수정·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는 능력을 포함해야 한다.

제 11.9 조 국내 통신 분쟁의 해결

구제신청

1. 제 19.3 조(행정절차)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또는 부가 서비스 공급자가 상호접속을 제외한 제11.2조 및 제11.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련된 국내조치에 대하여 그 규제기관에 시의적절하게 구제를 신청한다. 그리고

나.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합리적이고 공개적으로 명시된 기간 내에, 그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적절한 조건과 요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규제기관에 구제를 신청한다.

재검토

2. 각 당사국은 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으로 피해를 당한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또는 부가 서비스 공급자가 그 기관에 그 판정 또는 결정의 재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신청은 그 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재고는 다음에 관한 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서비스 공급자 간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분쟁, 또는

나.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정책의 수립과 적용

사법심사

4. 각 당사국은 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으로 피해를 당한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그 판정 또는 결정을 독립적인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불복청구할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 의무는 제19.4조(재심 및 불복청구)에 규정된 의무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제 11.10 조 투명성

투명성과 관련된 이 장의 그 밖의 규정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가. 다음을 포함하여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그리고 부가 서비스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

1) 서비스의 효율 및 그 밖의 조건

2)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3)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공중 통신 전송 망에 부착하는 데에 적용되는 조건, 그리고

4) 통보, 허가, 등록 또는 면허 요건이 있으면, 그러한 요건, 그리고

나. 표준 관련 조치의 준비, 개정 및 채택을 담당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

제 11.11 조 규제적용 면제

양 당사국은 통신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폭넓은 선택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다.

- 가. 그 규제의 집행이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관행을 예방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규제의 집행이 소비자 보호에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 다. 그 규제적용의 자제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공급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제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공이익에 합치하는 경우

제 11.12 조 부가 서비스의 공급조건

1. 당사국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가. 그러한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할 것
 - 나. 그 요율을 비용상 정당화할 것
 - 다. 요율표를 제출할 것
 - 라. 자사 망을 특정 고객 또는 망과 연결할 것, 또는
 - 마. 공중 통신 전송 망 이외의 또 다른 망에 연결하기 위하여 특정 표준 또는 기술 규정을 준수할 것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특정 경우에 있어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단한 부가 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또는 달리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 1 항에 기재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1.13 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이 장이 우선한다.

제 11.14 조 국제기구 및 협정과의 관계

양 당사국은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국제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위한 국제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 전기통신연합과 국제표준화기구를 포함하여,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작업을 통하여 그러한 표준을 증진할 것을 약속한다.

제 11.15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기업이란 제1.8조(일반적 적용의 정의)에 정의된 “기업” 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상호접속이란 하나의 공급자의 이용자가 또 다른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또 다른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간을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사내통신이란 기업이 그 기업 내에서, 또는 그 자회사, 지점, 그리고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계열사와, 또는 자회사, 지점 및 계열사 간 소통하는 통신을 말하나, 관련 자회사, 지점 또는 계열사가 아닌 기업에 공급되거나, 고객 또는 잠재적 고객에 대하여 제공되는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정의의 목적상, 자회사, 지점, 그리고 적용가능한 경우 계열사는 각 당사국에 의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정의된 것이다.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가격 및 공급에 관한 참가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급자를 말한다.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망 중단점이란 이용자의 구역에서 공중 통신 전송 망의 최종 경계를 말한다.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그 밖의 모든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을 말한다.

공중 통신 전송 망이란 정의된 망 중단점 간에 통신을 허용하는 공중 통신 기반시설을 말한다.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란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당사국이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요구하는 통신 전송 서비스로서,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중단

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지점 간의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의 실시간 전송을 수반한다. 이 서비스는 특히 전보, 전화, 텔렉스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할 수 있다.

규제기관이란 통신의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하며,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다.

서비스의 공급이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서비스의 공급
-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서비스의 공급
- 다.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제8장(투자)에 정의된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그 영역에서의 서비스의 공급, 또는
-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이용자란 서비스 소비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부가 서비스란 고객 정보의 형태 또는 내용상 제고를 통하여, 또는 그 저장 및 복구를 제공함으로써 그 정보에 가치를 더하는 서비스를 말한다.